

『공유재산(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) 사용료 감면 동의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는 '15. 4월 산업부의 3D프린팅 대경거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 되었으며,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본 공모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3D 프린팅 제조혁신센터 내 「대경거점센터」를 운영하고 있음.
- 이에 수행기관의 원활한 거점센터 운영을 위해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생산 기술연구원의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동의를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사용료 감면
 - 위 치 : 구미시 구미대로 350-27, 금오테크노밸리 내
 - 사용주체 : 한국생산기술연구원
 - 감면기간 : '19. 7. 1. ~ '20. 6. 30. (12개월)
 - 사용면적 : 724.5㎡(1층 535.5㎡, 2층 189㎡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3조, 제17조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

○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개요

- 위 치 : 구미시 구미대로 350-27, 금오테크노밸리 내
- 규 모 : 3,882.9m², 지상1층 ~ 4층
- 건 립 비 : 35.7억원(도11, 시 24.7) ※ 준공일 : '16. 2. 29
- 사업내용 : 3D프린팅 센터구축, 연구개발, 기업지원, 인력양성 등
- 운영방법
 - 건물 운영 및 관리: 구미시(신산업정책과) 직접운영
 - 3D프린팅 대경거점센터 운영: 한국생산기술연구원(수행기관)

위치도

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공유재산(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) 사용료 감면 동의안」 은

-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사업기간이 3년간이었던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구축사업을 1년 연장하기 위하여 금오테크노밸리 내 건물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,
-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며 3D프린팅 첨단 장비를 구축하여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신기술을 보급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, 연간 사용료 3억6천8백만원을 감면받아 사업기간을 연장할만한 타당한 사유와 효과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